

안양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채용시험 공고

안양교도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안양교도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 (9급)	1명	정년 적용	안양교도소 복지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 관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 계호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75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490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성별, 학력, 거주요건 : 제한없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9. 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국내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예정) 또는 면허취소인 자(예정인 자 포함)는 응시 불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2026. 8. 14.) 기준. 단, 무사고 운전경력 등은 공고일 기준]

우대요건	○ 직무 관련 근무 경력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대형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대형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 및 화물차, 특수차 등 운전경력 불인정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 사무자동화 자격증 소지자
------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아래의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각 요건 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우대요건 관련

1. [직무 관련 근무 경력 제출 관련 안내]

-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명서상 경력 기간이 모두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 시험 당일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경력 내용과 불일치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서류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연, 월, 일 표시),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를 토대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 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 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경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체적인 경력증명서에 위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 사용 가능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천>

2. [직무 관련 자격증 제출 관련 안내]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동차검사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되 자동차정비자격증과 중복 배점 불가
 - 자동차 정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 검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동차검사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되, 자동차정비자격증과 중복 X
- ※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3.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우대 관련 안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2016. 8. 4. ~ 2026. 8. 3.)
- **공고일 후(2026. 8. 4. 이후 발급된 것)**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교통사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건별 감점 처리
 - ※ **2026. 8. 3.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2026. 8. 4. 이후에 발급할 것**
 - ※ **2026. 8. 3. 이전 날짜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것, 미제출 시, 운전경력 판단 불가로 최하점 처리**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의 일반적인 교통사고·법규위반 사항은 건수 별로 정해진 점수를 차감하지만 음주·약물복용·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발견 시, 최근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횟수와 관계없이 최하점 처리

4. [사무자동화 자격증 보유자 우대 관련 안내]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 위 4개의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으로 유리한 것 1개를 우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8. 3.(월) ~ 8. 14.(금)	'26. 8. 11.(화) ~ 8. 14.(금)	'26. 8. 31.(월)	'26. 9. 9.(수)	'26. 9. 18.(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임용예정일은 2026년 9월 중이나, 신원조회 등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따라 10월 경으로 변동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11.(화) ~ 8. 14.(금)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빠른등기 이용 권장)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141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 안양교도소 총무과 인사팀(운전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문의전화 : 031-380-8224(총무과 인사팀)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필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수수료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구 분	내 용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필독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필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서식 제8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필수)	○ 공고일 후(2026. 8. 4. 이후 발급된 것)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2026. 8. 3. 이전 발급분 인정하지 않음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 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2026. 8. 3. 이전 날짜로 증명서로 발급한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운전경력 판단 불가로 최하점(0점) 처리 ○ 교통사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건별 감점 처리 ○ 음주·약물복용·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최근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횟수와 관계 없이 최하점(0점) 처리
1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 분	내 용
12.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우대경력 보유자가 해당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참고 ○ 연차별 차등 우대, 1년 이상의 근무경력부터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으로 판단 ○ 근무기간(연·월·일),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운행차종, 승차인원, 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회사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군 면허(군 대형면허 포함)를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다만, 군 대형면허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갱신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은 인정) ※ 경력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3.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자동차 정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 검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동차검사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되, 자동차정비자격증과 중복 X
14. 사무자동화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워드프로세서는 단일등급, 구 1급(2012.1.1. 이전)만 인정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명서상 경력 기간이 모두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 시험 당일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경력 내용과 불일치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누락 시 경력 불인정

① 경력증명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연, 월, 일 표시),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를 토대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 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 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경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체적인 경력증명서에 위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예시)]를 사용하여 제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추천

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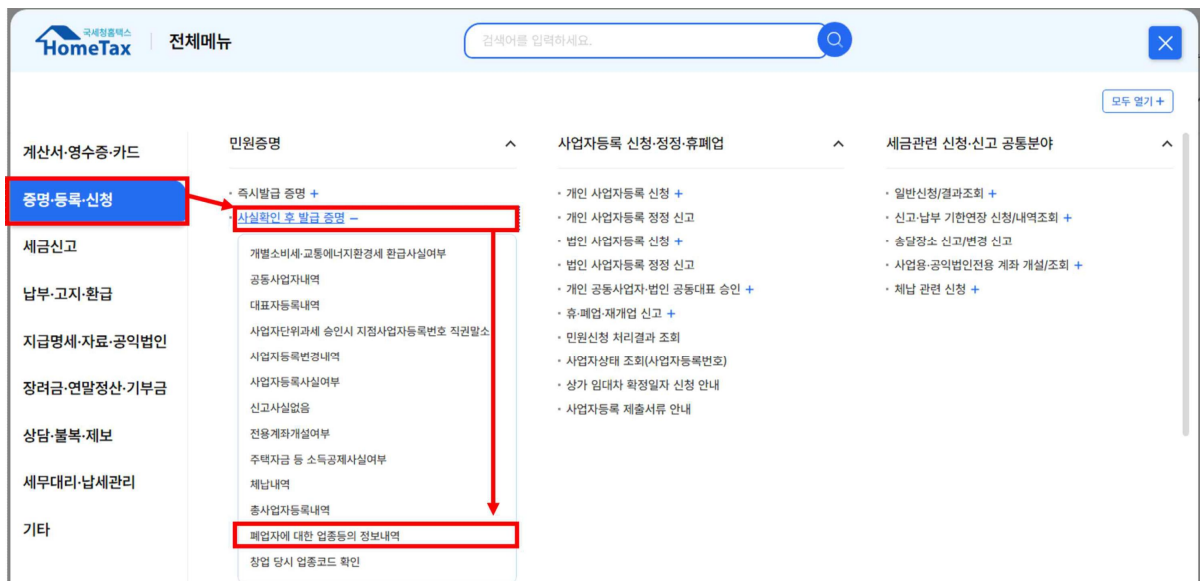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급여 지급 내역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불합격,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별지서식 제10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19. ~ '26. 10. 18.<별지서식 제11호>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년 9월 중(또는 10월경)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의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교도소 총무과 인사팀으로(031-380-8224)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안양교도소 복지와 (안양시 동안구)
주요 업무		○ 관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 계호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 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업무를 위한 차량 점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유사시 차량 응급조치 관련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자격증에 한함		
우대요건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관련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2016. 8. 15. ~ 2026. 8. 14.)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자동차정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복수 자격증 제출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동차검사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되 자동차정비자격증과 중복 X ○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법규 준수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2016. 8. 4. ~ 2026. 8. 3.) * 공고일 후(2026. 8. 4. 이후 발급된 것)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교통사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건별 감점 처리 ※ 2026. 8. 3. 이전 발급분 인정하지 않음 ※ 2026. 8. 3. 이전 날짜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것, 미제출 시, 운전경력 판단 불가로 최하점 처리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의 일반적인 교통사고·법규위반 사항은 건수별로 정해진 점수를 차감하지만 음주·약물복용·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발견 시, 최근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횟수와 관계없이 최하점 부여 ○ 사무자동화 자격증 보유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으로 유리한 것 1개를 우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2026. 9. 9.)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필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수수료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필독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필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 【별지서식 제8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필수)	○ 공고일 후(2026. 8. 4. 이후 발급된 것)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2026. 8. 3. 이전 발급분 인정하지 않음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면허경력, 교통 사고, 법규위반을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 ○ 2026. 8. 3. 이전 날짜로 증명서로 발급한 경우,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미제출 시, 운전경력 판단 불가로 최하점(0점) 처리 ○ 교통사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건별 감점 처리 ○ 음주·약물복용·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최근 10년 이전도 포함하여 횟수와 관계 없이 최하점(0점) 처리

구 분	내 용
1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12.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우대경력 보유자가 해당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참고 ○ 연차별 차등 우대, 1년 이상의 근무경력부터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으로 판단 ○ 근무기간(연·월·일),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운행차종, 승차인원, 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회사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 ○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군 면허(군 대형면허 포함)를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다만, 군 대형면허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갱신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관련 분야에서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 경력은 인정) ※ 경력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3.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자동차 정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 검사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동차검사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되, 자동차정비자격증과 중복 X
14. 사무자동화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워드프로세서는 단일등급, 구 1급(2012.1.1. 이전)만 인정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명서상 경력 기간이 모두 동일한 기간만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 시험 당일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경력 내용과 불일치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결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누락 시 경력 불인정

① 경력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에 업체명, 근무기간(연, 월, 일 표시), 담당업무, 운전자종, 승차인원,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를 토대로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 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 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체적인 경력증명서에 위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증명서(예시)]를 사용 가능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추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직급(분야)
	안양교도소	운전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또는 동봉)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
9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
10	운전경력증명서	필수	☐
11	주민등록초본	필수	☐
12	경력(재직) 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해당자	☐
13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
14	사무자동화 자격증 사본	해당자	☐

※ □에 서류 제출유무를 √하여 제출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2026년 양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응시원서

안양교도소장 귀하

본인은 2026년 제1회 안양교도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국적명 :) ☐ 아니오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1회 안양교도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안양교도소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3.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운전서기보, 운전
 - ② 응시자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예'에 체크하고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아니오' 체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요건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5.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5.1~12.31.(○○휴직)	○○ (0급)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직무 관련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사무 자동 화 자격 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운전
- ③ 응시자격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 : 자격증명, 자격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직무 관련 경력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 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 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 재직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함

자격증 우대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 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안양교도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정의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안양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u>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u>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안양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경력(재직) 증명서(예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①		근무기관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운행차종 ③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④	비고 ⑤	
	부터	까지							
	(예시) ‘10.5.1	‘14.5.31				승합차 (대형)	전임		
	총 3년6월 (42개월) ※ 휴직사유 및 기간 기재					현대 유니버스 00인승	(주00시간 근무)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행청		년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발 급 자 증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① 근무기간 : 직무 관련 경력 기간 기재 ②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운행차종 : 승합차 종류(대형), 제조사, 00인승, 차량모델명 기재 ④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와 주 근무 시간 기재 ⑤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⑥ 응시자 본인이 발급(인사)담당자인 경우 2명 이상의 발급자 확인 필요 ⑦ 발급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11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